

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68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7. 3.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달성군의 관광명소인 비슬산과 화원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 교통편의 시설물을 제공하고 있으나, 초기 도입 시의 노선에 대한 변경 및 이용료 현실화, 국가유공자 및 달성군민의 이용료 감면 등이 요구되어 조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관광객 이용시설 이용료 조정 및 감면대상 추가(안 제5조)
- 나.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의 운행 노선·구간 변경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제139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성별/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4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7. 2. 15. ~ 3. 7.(20일간)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이용료 면제 및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빈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
2.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3. 달성군민
4.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,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의 운행노선은 화원유원지 주차장(이하 본항에서 “주차장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약초원, 동물원을 지나 전망대까지를 상행노선으로 하고, 전망대로부터 편백나무숲, 수변을 지나 주차장까지를 하행노선으로 하되, 그 운행구간은 군수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별표1제2호의 구분란 중 “순환형”을 “편도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2항, 같은 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이용료

1.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

(단위 : 원)

구 분		요 금
편도	소인	6,000
	대인	10,000
· 부가세 10% 포함		

2.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

(단위 : 원)

구 분		요 금
편도	소인	3,000
	대인	5,000
· 부가세 10% 포함		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
[별표1] 이용료 2. 회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 (단위 : 원)	[별표1] 이용료 2. 회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 (단위 : 원)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 분</th> <th>요 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순환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0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	요 금	순환형	소인	3,000	대인	5,000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 분</th> <th>요 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편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0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	요 금	편도	소인	3,000	대인	5,000
구 분		요 금															
순환형	소인	3,000															
	대인	5,000															
구 분		요 금															
편도	소인	3,000															
	대인	5,000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가세 10% 포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가세 10% 포함 																

□ 지방자치법 제136조(사용료)

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
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